

홍콩	수출현안/ 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(2016년 3월 16일) / 홍콩 aT센터

구분	핵심 내용
(*검역)	☐ “ 대만 「축산제품 중 잔류농약 제한량 표준」 수정안 시행 ”

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
☐ **주요 내용**

○ 동물 관련 제품의 잔류 농약 관리 강화를 위해, 식품안전위생관리법 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근거하여 잔류농약 안전허용량을 초과한 제품은 제조, 가공, 배합, 포장 운송, 보관, 판매, 수입, 수출, 증정품 제작 및 상품 진열 등을 금지 하고,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잔류농약 안전허용량의 표준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함

○ 주요내용

- (1) 본 규정의 명칭을 《동물상품중농약잔류허용량표준(動物產品中農藥殘留容許量標準)》으로 변경
- (2) 본 규정 내용 중 「식품위생관리법」을 「식품안전위생관리법」으로, 「잔류제한량」을「잔류허용량」으로, 「축산류」을「동물류」로 변경
- (3) 벌꿀 상품 내 “카벤다짐(Carbendazim)” “이프로다이온(IProdione)” 잔류농약허용량 신규제정
- (4) 벌꿀, 로얄젤리 상품 내 “플루바리네이트 (fluvalinate)” 의 잔류농약 허용량 신규제정

국제통용어	일반 명칭	잔류 제품	관련 동물류	잔류 허용량(ppm)
Carbendazim	카벤다짐	벌꿀제품	꿀벌	0.05
fluvalinate	플루바리네이트	벌꿀, 로얄제리	꿀벌	0.05
IProdione	이프로다이온	벌꿀제품	꿀벌	0.05

○ 문서공시일자 : 2016년 3월 18일, 문서번호 : 部授食字第1051300758號

☐ **시사점 / 대처 방향**

○ 대만 <축산제품 중 잔류농약 제한량 표준>이 <동물 관련 제품의 농약 잔류 초과 허용량 표준> 등 명칭 변경을 통한 해당 범위 확대 및 벌꿀 관련 제품의 신규 제정 등 위생관리를 강화함. 관련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 축산 및 축산 가공업체들은 수입업체와 함께 동 내용을 숙지하여 수입 검역 및 대만 시중 위생 검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

☐ **발표 일자/ 출처** : 2016. 3. 18 대만 위생부식품약품관리서 공고란에 게재됨